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정보자료실
Mc1.32

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정보자료실
Mc1.32

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본 연구보고서는 2003년도 법무부 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장필화

공동연구원 :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란, 조중신

발 간 사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인 최근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바꿔가는 여성인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130여개가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성폭력 피해 고소율은 10%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상담현장에서는 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지난 2년동안의 성폭력 피해 사례 중, 형사사법절차상 겪는 2차 피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 발생의 주 요인으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성폭력 2차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를 지지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가도록 우리 사회가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필화 교수님을 비롯한 공동연구원,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 준 법무부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목 차

연구요약 ····· 8

제 1 장 서 론 ····· 17
1. 연구 목적 ····· 17
2. 연구 방법 ····· 19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0

제 2 장 이론적 논의 ····· 29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 29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 38

제 3 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 42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 43
(1) 아동 성폭력 ····· 43
(2) 청소년 성폭력 ····· 49
(3) 성인 성폭력 ····· 53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 55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55
1) 가족·친족에 의한 성폭력 ····· 56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 59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 61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62
1) 직장·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 63
2) 종교·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 71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 73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74
2) 동성에 의한 성폭력 ····· 78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 82
3.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 87
(1) 경찰수사 과정 ····· 88
(2) 검찰수사 과정 ····· 92
(3) 공판 과정 ····· 95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 96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 97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 100

제 4 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 101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 102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 103
(2) 피해자 유발론 ····· 106
(3) 가해자 옹호론 ····· 112
(4) 동의된 성관계론 ····· 117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 121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 121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 125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 128
(4) 부적절한 증인신문 ····· 132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 132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 140
(7) 처벌조항 없음 외 ····· 143

제 5 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 147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147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 147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 148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 149
3) 부부강간의 처벌 ····· 151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 152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 153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 153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 154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 155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 156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 156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 156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 157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 159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 159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 160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 160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 161
(5) 기타 제도의 보완 ····· 162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 162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 163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 164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 165
2. 수사·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 166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 166
1) 교육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 ····· 166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 173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 175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 176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 177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 178

제 6 장 결 론 ····· 180

참고문헌 ····· 183

부록 ····· 203

표 · 그림 목차

<표 1> 상담사례의 법적 지원 (2001-2002) ····· 21
<표 2>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주된 상담내용 분류 ····· 22
<표 3> 2001년도, 2002년도 법적 문의 사건 ····· 23
<표 4> 2001년-2002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 24
<표 5>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 건수(2002) ····· 24
<표 6>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 건수(2002) ····· 25
<표 7>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 건수(2002) ····· 26
<표 8>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 27
<표 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 27
<표 10>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 28
<표 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현황 ····· 44
<표 12>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2000–2002년) ····· 49
<표 13> 피해자의 연령(2001-2002년) ····· 50
<표 14>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 55
<표 15>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 56
<표 16> 공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 62
<표 17>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 74
<표 18>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 75
<표 19>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 88
<표 20>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 89
<표 21> 성 범죄자 처분 결과 (1997 / 2002) ····· 94
<표 22>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 96

<그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03

연 구 요 약

1. 연구의 목적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여성 인권 단체들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NGO와 경찰·사법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의 실천을 위한 관계자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주제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 상담 사례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상담 사례 분석은 본 연구의 골격을 이루는 연구방법으로, 분석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과 2002년의 상담 사례 총 2,869건과 2,961건 중 각 연도의 고소 사례 425건과 375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소 내담자 중 형사절차와 관련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 여성 20여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사례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차 피해 실태를 연령별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특성과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나누어 교차 분석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해 2차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에 따른 2차 피해는 친족, 학내, 직장 내, 데이트, 이웃 등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직장, 학교, 종교인, 의료인에 의한 공적 관계에서 성폭력 및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3장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2단계 사례 분석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를 이와 같은 연령, 관계 특성, 수사·공판 단계에 따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발생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와,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내용은 4장의 연구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5장에서는 3, 4장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수사·공판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에 의거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형사사법계 실무자 및 전문가들-지방경찰청 강력계·여성청소년계 수사관, 법무연수원, 검찰청 수사검사·조사관, 각 법원 공판 검사실 조사관,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형사절차 관계자 20인과 여성단체 활동가, 법조인, 여성학자, 성폭력전문상담소 실무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20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3.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2차 피해 건수는 2001년도 232건, 2002년 266건이다. 이를 대상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차 피해 발생율은 2001년의 경우 성인 81.1%, 청소년 9.0%, 아동 1. 3%이며 2002년의 경우 성인 85.3%, 청소년 5.3%, 아동 0.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 1차 피해의 연령별 순서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피해는 전체 사건의 25~30% 인데 반해 2차 피해 비율은 0.8%(2001년), 1.3%(2002년)로 나타나고 있어 2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배려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아동 성폭력의 경우 법적 문의 사례는 많으나 보호자가 아이의 고통과 장래를 염려하여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다. 또한 고소 이전의 합의로 끝나거나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로서 고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사적 관계, 공적 관계, 특수 관계에서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27.4%, 2002년 23.8% 이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이웃 등 아는 사람, 교제 관계, 가족·친족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약 25%로, 직장·학교 등 일터, 종교·의료 등에서의 관계에 의한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35%로,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동성 성폭력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1>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관계	가족 · 친족	10	4.2	10	3.7
	교제관계	25	10.5	29	10.6
	이웃 등 아는 사람	30	12.7	26	9.5
	소계	65	27.4	65	23.8
공적 관계	직장 · 학교 등 일터	40	16.9	63	23.1
	종교 · 의료 등	18	7.6	8	2.9
	소계	58	24.5	71	26
특수 관계	장애인	3	1.3	4	1.5
	동성	2	0.8	3	1.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79	33.3	89	32.0
	소계	84	35.4	96	34.6
기타		30	12.7	41	15.0
합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의 통계에도 중복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각 이 건수만큼 연령별 합계보다 늘어나 집계되었다.

** 이 표는 본문의 <표 10>과 같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과정 2001년 80.6%, 2002년 52.2%, 수사·공

판 과정 외 2001년 11.6%, 2002년 21.1%, 공판과정 2001년 7.8%, 2002년 11.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아래의 <표2> 참고). 약 80~90%의 2차 피해가 수사·공판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공판 단계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수사 · 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19.4	45	16.9
	고소	30	12.9	28	10.5
	경찰수사중	73	31.5	66	24.8
검찰 수사 단계	검찰수사중	39	16.8	40	15.0
수사 · 공판과정 외	수사 · 공판과정 외	45	19.4	87	32.7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는 본문의 <표 9>와 같다.

4.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본 연구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는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2) 피해자 유발론 3) 가해자 옹호론 4) 동의된 성관계론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성 통념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수사·공판 담당

자들은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시킨다, 이른바 성폭력의 대부분은 동의된 성관계이다, 많은 성폭력 피고소인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와 같은 통념들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통념들은 수사·공판 담당자들로 하여금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증인 신문의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피해자가 비난받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지지를 받는 관계로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1> 수사 · 공판 담당자의 통념 속에서 전도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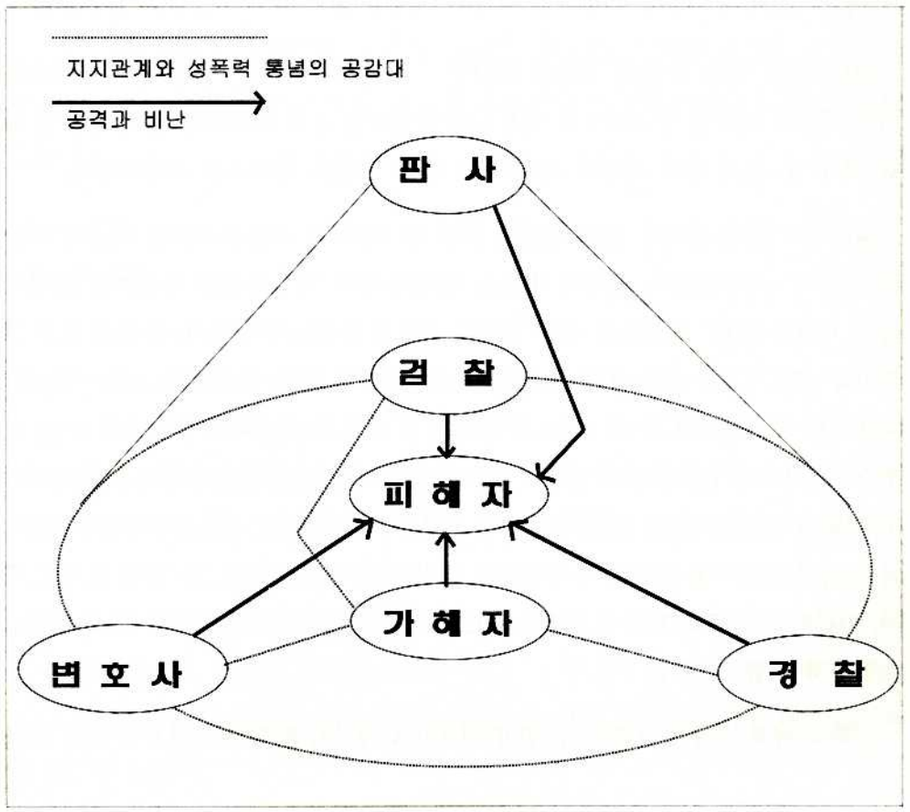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서 성폭력 2차 피해는 수사 · 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 못지 않게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배려의 미흡함에서도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법 ·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2차 피해는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4) 부적절한 증인신문,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 미비,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피해자 보호제도 미흡, 7) 처벌조항이 없음 외 기타로 분석되었다. 수사 · 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이와 같은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배려의 미흡은 함께 결합되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5.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2차 피해에 대한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법 · 제도의 개선점과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과 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 · 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 · 제안되었다. 성폭력 범죄는 현재와 같이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 · 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수사 · 공판 과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시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대시키고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와,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이나 공판참여권과 같은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인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친고죄 폐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배상명령 제도 및 재정신청 제도 적용 확대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두 번째 대책으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인,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 · 장기적 관점에서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담당자를 양성하는 제도적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의 두 번째 방안으로는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현재 미약하나마 맹아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법여성학의 제도화 보다는 좀 더 조속히 시행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안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검찰의 지침 구체화 및 수사기법 개발,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판사의 공판 진행 예규의 마련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6. 결 론

이제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보다도 철저히 성폭력 피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약 5백 여 건의 상담 사례와 20개의 심층면접 사례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그만큼 예방과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안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여성계와 형사사법계의 폭넓은 공감대에서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체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 연구가 앞으로 2차 피해를 축소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권위가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는 법적 가부장성의 변화, 양성 우호적인 법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계와 형사사법계는 그 동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의 과정에서 구축한 여성계와 사법계와의 공조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질적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 론[1)]

1. 연구 목적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된 후 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대검찰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정과 성희롱·성추행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여성실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의 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전환하고, 성범죄 수사점수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과 상담 현장의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는데 주변의 지지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적 해결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또 다시 '2차 피해'를 겪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고통

1) 이번 연구에 자문을 주신 김엘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명선(늘푸른여성정보센터 소장), 조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표창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담일지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을 맡아준 김혜욱(한국성폭력상담소 자원활동가), 마지막까지 자료집 편집에 힘을 써준 한은영(이대 여성학과 석사과정)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더욱 심화되는 경험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상담을 의뢰하는 전체 피해자의 40-50%가 법적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스스로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법적 해결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고소율은 13% 미만에 머물러 있다. 사건 의뢰 과정・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여성비하적 발언 등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적・제도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피해 극복이 오히려 요원해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상담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문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2차 피해'의 문제들은 공정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199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등 비교적 피해 정도가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6.1% 라고 발표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토록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데에는, 피해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비난론'과 '순결을 잃은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러한 편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여성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6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의 변화 심포지움, 1999년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간담회(서울시내 경찰서)를 개최하였다. 2000년에는 서울여성의전화와 연대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경찰교육(서울시내 경찰서 대상), 2001년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경찰 워크숍(서울 시내 파출소)을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하고,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판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무엇보다 우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NGO와 경찰・사법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관행들로 인한 문제들을 '2차 피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의 실천을 위한 관계자 공조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주제 연구들에 대한 문헌 연구, 상담 사례 분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성폭력 관련 법조문과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상담 사례 분석은 본 연구의 골격을 이루는 연구방법으로, 분석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과 2002년의 상담 사례 총 2,869건과 2,961건 중 각 연도의 고소 사례 425건과 375건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소 내담자 중 형사절차와 관련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 여성 20여명을 심층면접 하였다.

사례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차 피해 실태를 연령별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특성과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나누어 교차 분석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피해자를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노년기 여성으로 구분해 2차 피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에 따른 2차 피해는 친족, 학내, 직장 내, 데이트, 장애인, 남성, 성직자, 의료진 성폭력 및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은 3장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2단계 사례 분석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를 이와 같은 연령, 관계 특성, 수사·공판 단계에 따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발생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와,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내용은 4장의 연구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5장에서는 3, 4장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수사·공판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분석에 의거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형사사법계 실무자 및 전문가들-지방경찰청 강력계, 여성청소년계 수사관, 법무연수원, 검찰청 수사검사, 조사관, 각 법원 공판 검사실 조사관, 검사, 변호사, 판사 등 형사절차 관계자 20인-과 여성단체 활동가, 법조인, 여성학자, 성폭력전문상담소 실무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 20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법상 2차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1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2,869건, 2002년에는 2,96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법적 문의는 2001년 839회, 2002년 1,154회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30~40%에 이른다(<표 1>참고). 이 중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상담내용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2001년과 2002년의 법적 지원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비교해보면, 법적 문의는 약 300회가 증가하였고 고소건수는 역으로 425건에서 375건으로 50건이 줄었다. 그리고 경찰 연계 건수는 120건에서 35건으로 85건이나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소나 경찰 연계와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간 경우가 줄어든 것은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상담사례의 법적 지원 (2001-2002)

내용	2001년	2002년
성폭력 사건	2,869건	2,961건
법적 문의	839회	1,154회
고소 건수	425건	375건
토요법률상담	122회	107회
경찰 연계	120건	35건
검찰 수사 중 동행 참고인 출두 상담일지·진정서 송부 법정동행 증인 출두	51회	47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 사건은 1건으로 계산된다.

** 1건의 사건에 중복되는 회수의 지원이 계산된다.

그러나 상담소의 지원 활동은 <표 2>의 호소 내용에 모두 응해주고 있지는 못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경찰 연계 시 상담원 배석 하에 진술하도록 경찰에 동행, 또는 상담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협조 요청
- 검찰진술 시 동행, 필요시 상담원이 참고인으로 출석
- 필요시 검찰, 재판부에 상담일지 사본을 제출, 진정서 송부
- 피해자 증인 신문 시 법정 동행, 특정 사건은 재판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 무고 등 연루사건,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이혼소송, 친권양도소송 등에 변호사 선임 연계

<표 2> 법적 지원을 바라는 내담자들의 주된 상담내용 분류

고소 전 법적 대처방안문의	고소가능 여부/ 고소방법 및 절차/ 고소장 작성방법/ 증거확보 방안/ 고소 전 합의 방안	
고소 후 수사 · 재판 절차에서의 대처방안 문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신고나 고소 후 경찰 진술 시 준비사항/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피해자 진술, 대질심문시의 어려움/ 보호자동석 못하게 하는 것/ 유아, 어린이 진술에서의 신빙성 의심/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또는 비난성 발언/ 편파수사 의심/ 가해자 측의 부인,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간의 지체/ 재 수사 지시/ 현장검증에서의 어려움/ 피해자신분 비밀보장/ 합의종용에 대한 의심/ 죄목변경/ 구속여부/ 불구속시의 불만/ 고령자, 정신질환자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군인 가해자 처리/ 수사담당 경찰의 성추행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검찰 송치여부/ 송치 및 계류기간/ 불기소 의견 송치/ 구속영장 기각/ 검찰 조사관의 태도/ 거짓말탐지기/ 무고위협/ 진정서, 탄원서 작성 및 송부 요청/ 상담일지 송부 요청/ 검찰수사에서의 동행 요청/ 기소여부 사건결과통지서 송달/ 불기소이유/ 항고, 재항고 여부/ 항고장, 항고이유서 작성
	재판과정에 대한 문의 및 호소	약식재판/ 특방/ 형량/ 벌금형/ 증인 소환에 대한 대처/ 법정동행 요청/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송부/ 공탁금/ 가해자 측 변호인의 태도/ 비공개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혼 및 친권박탈 소송/ 법률구조기금 신청/ 무료 법률상담/ 항소 및 상고
	가해자 측의 태도	고소취하 요구/ 협박/ 해코지/ 합의방법/ 합의금액/ 공증하는 방법/ 내용증명/ 무고, 명예훼손, 폭행, 간통 등으로 피고소
	구속 중 또는 출소 이후	출소 이후의 접근/ 해코지/ 협박

상담소의 2001년, 2002년 상담 중 법적 문의를 한 사례의 사법적 절차 단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2001년도, 2002년도 법적 문의 사례

<단위 : 회>

법적절차	2001년		2002년	
	회	비고	회	비고
고소고려	177		382	
성폭력 고소	405	* 경찰수사중 257 * 검찰수사중 146 * 군검찰 2	512	* 경찰수사중 303 * 검찰수사중 209
고소 취하	3		3	
신고	143	* 112 * 파출소	122	* 112 * 파출소
항고	1		2	
피소	8	* 폭행 3 * 명예훼손 3 * 무고 2	7	* 업무방해 2 * 명예훼손 3 * 무고 2
재판	83	* 1심 66 * 2심 17	102	* 1심 73 * 2심 27 * 3심 2
합의	16		13	
민사	2		7	
진정	1	* 노동부	4	* 노동부 2 * 여성부 1 * 교육청 1
계	839		1,154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4> 2001년-2002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 건, %>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성폭력	몰래카메라	계
2001년	997	100	113	1,130	423	60	36	10	2,869
2002년	942	88	174	1,196	479	49	26	7	2,961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5> 피해유형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유형별 건수	고소건수	유형별 고소비율	전체 상담 중 유형별 고소비율
강간	942	123	13.1	4.2
강간미수	88	29	33.0	1.0
특수강간	174	64	36.8	2.2
성추행	1,196	143	12.0	4.8
성희롱	479	13	2.7	0.4
음란전화	49	2	4.1	0.1
사이버성폭력	26	1	3.9	(0.0)
몰래카메라	7	0	0	0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체상담 중 1차상담시 고소한 비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2년 성폭력 피해상담 총 2,961건 중 375건(12.7%)이 1차 상담 시 고소를 하였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볼 때 고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특수강간으로 174건 중 64건(36.8%)이며, 강간미수 88건 중 29건(33%), 강간 942건 중 123건(13.1%), 성추행 1,196건 중 143건(12%), 음란전화 49건 중 2건(4.1%), 사이버 성폭력 26건 중 1건(3.9%), 성희롱 479건 중 13건(2.7%) 순이다. (<표 5>)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고소율이 가장 높아 1,649건 중 249건(15.1%)이 고소를 했고, 미상 70건 중 9건(12.9%), 어린이 461건 중 50건(10.8%), 청소년 570건 중 55건(9.6%), 유아 211건 중 12건(5.7%) 순이다. (<표 6>)

<표 6> 피해연령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연령별 건수	고소건수	연령별 고소비율	전체 상담 중 연령별 고소비율
유아	211	12	5.7	0.4
어린이	461	50	10.8	1.7
청소년	570	55	9.6	1.9
성인	1,649	249	15.1	8.4
미상	70	9	12.9	0.3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전체상담 중 1차상담시 고소한 비율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별로 보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572건 중 125건(21.9%), 아는 사람의 경우는 2,278건 중 230건(10.1%)이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전체 피해의 77%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고소율은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분관계가 높은 친족·친인척의 고소율이 낮았고, 이보다 친분관계가 낮은 동네사람과 채팅상대일 경우가 고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

<표 7>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본 고소 건수(2002)*

<단위 : 건, %>

		전체건수	고소건수	관계별 고소비율	전체 상담 중 관계별 고소비율
아는 사람	친족/친인척	378	10	2.6	0.3
	직장내	597	49	8.2	1.7
	데이트 상대	152	16	10.5	0.5
	채팅	95	14	14.7	0.5
	동네사람	218	42	19.3	1.4
	서비스 제공자	80	9	11.2	0.3
	성직자/신도	8	0	0	0
	학교/학원내	351	0	0	0
	기타	399	62	15.5	2.1
모르는 사람		572	125	21.9	4.2
미상		111	20	18.0	0.7
계		**2,961**	**375**	·	**12.7**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상담중 1차 상담시 고소한 비율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차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2차 피해의 연령별, 수사·공판 단계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현황은 아래의 <표8>, <표9>, <표10>과 같다.

<표 8>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아 동	3	1.3	2	0.8
청소년	21	9.0	14	5.3
성 인	188	81.1	227	85.
미 상	20	8.6	23	8.6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9> 수사 · 공판 단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경찰 수사 단계	신고	45	19.4	45	16.9
	고소	30	12.9	28	10.5
	경찰수사중	73	31.5	66	24.8
검찰 수사 단계	검찰수사중	39	16.8	40	15.0
수사 · 공판과정 외	수사 · 공판과정 외	45	19.4	87	32.7
계		**232**	**100**	**266**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표 10>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가족 · 친족	10	4.2	10	3.7
	교제관계	25	10.5	29	10.6
	이웃 등 아는 사람	30	12.7	26	9.5
	소계	65	27.4	65	23.8
공적	직장 · 학교 등 일터	40	16.9	63	23.1
	종교 · 의료 등	18	7.6	8	2.9
	소계	58	24.5	71	26
기타 특수	장애인	3	1.3	4	1.5
	동성	2	0.8	3	1.1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기타	79	33.3	89	32.6
	소계	84	35.4	96	35.2
기타		30	12.7	41	15.0
합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의 통계에도 중복 포함되었다. 따라서 각각 이 건수만큼 연령별 합계보다 늘어나 집계되었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으로 1983년 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고, 공권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다지 길지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성폭력 2차 피해라는 용어는 아주 최근에서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다.

1980년대에 군부나 부패한 정권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기타 여러 건의 성폭력 등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도 후반에 발생한 두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1987년 8월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는 어부의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순경에게 강간당하고 자살한 사건과 1988년 12월 대구 다방 종업원인 여성이 파출소 경찰관에게 윤간 당한 사건이다[3]. 이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87년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끝내 자살을 했다. 88년 사건 같은 경우

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20-25면.

3)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누구누구(피해자 이름) 사건'으로 명명하 는 것은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과 매스컴에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이다. 특히 매스컴을 탄 유명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치 고유명사처럼 '*** 사건'이라 불리며 각종 자료에 등장해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해서 들춰내게 된다. 또한 이렇게 피해자 이름만을 들어 사건을 명명하는 것은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조교 사건'이라 불리는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 이름을 따서 '신교수 사건'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따서 '*** 사건'이라고 성폭력 사건을 지칭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기술하기로 한다.

에는 피해자가 다방 여종업원이고, 이혼 여성이였다는 편견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또 하나 일반 사회와 사법기관의 성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1988년 성폭력 가해자의 혀를 깨문 여성이 검찰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와 함께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보다 그녀가 식당 주인이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혼경력이 있으며, 평소 동서와 불화가 잦았다는 등 성폭력 사건 외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춰졌었다[4].

이러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으나 외면되어져 왔던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성폭력 인권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피해 여성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이 폭로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과 인권운동 단체 등은 사법기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양 아래서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9년 강간을 주제로 한 세 논문[5]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세 논문 모두 통념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자화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었으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라는 용어에 대한 기술 없이 연구되었다.

이들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성폭력 2차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이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순결상실감'[6]인데 이는 여성의 정조를 목숨만큼 중요하

4) 그 결과 피해자는 1심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과 300만원의 허값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범인은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미수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1989년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5) 이들 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이다. 김선영, "강간 범죄의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1989; 박선미,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1989;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1989.

6) 이명선, 앞의 글, 1989, 60-65면.

게 여기는 사회 풍토[7]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문제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8]을 침해한 폭력이나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일종의 성관계로 인식되어 피해자들은 또 한번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고통은 단순히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성폭력을 통해 자존감 상실이나 자신의 몸이 도구화되었다는 느낌은 성폭력 피해 때문에 가지게 되겠지만, 순결상실감은 사회가 정해 놓은 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나 사회적으로 학습해 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피해에서 2차 피해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은 상해나 임신 같은 신체적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사회 통념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가 2차 피해로까지 발전되면서 그 후유증 역시 더 심각해지게 된다.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기간, 성폭력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 수치, 우울, 좌절, 불안, 남성 기피, 성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거나, 남편이나 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나 직장생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자가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직장 성폭력의 경우는 해고나 퇴

7) 특히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성폭력 때문에 받은 영향과 일생에 미친 파급효과는 서구의 여성에 견주어 볼 때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순결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무관하지 않다. 이경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0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

8) 성적 자기결정권(right to sexual autonomy)은 여성의 성(sexuality)과 관계된 많은 영역에서 제기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의 몸과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갖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해, 이제는 여성이 한 인격체인 동시에 주체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성폭력이 자퇴나 가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데[9], 피해 아동들은 분리불안 증세를 느끼기도 하고,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퇴행을 보이기도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후 상담을 청하기까지 3년이 지난 장기 사례가 27.1%나 되었으며, 특히 30년이 지난 사례도 60건(4.8%)이 있었다[10].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달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매우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11].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는 여성은 단순히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을 잃은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대접받아야 하며, 아내 구타의 경우에는 여성이 가정에서 아내나 어머니로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가정을 일탈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적 역할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폭력과 달리 성폭력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나 여성이 폭력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폭력에 대처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여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침묵하게 만든다.

이러한 피해자 비난은 여성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력 피해 여성

9)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보면, 지난 13년 동안 변함없이 아동성폭력 피해 상담이 전체 상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경, "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성폭력상담소의 역할", 2003;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12-113면.

10)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자료집」 1993. 이 자료집은 1991년 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총 1,264건의 상담을 분석한 것이다.

11) 안수진, "스토킹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97-102면.

은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남성을 유혹하는 헤픈 여자'이거나 '여성으로서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로 취급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이미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오명은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피해자 자신이 내면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로 남는다. 이것이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유형이다.

더구나 피해자나 주변인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찰과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만나게 되는 검사, 판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폭력 통념 등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거나, 성폭력 피해자는 순결을 잃은 사람이라는 식의 통념에 의해 이미 고통을 받아 2차 피해가 시작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사법인들의 똑같은 반응은 피해자들을 또 한번 좌절시키고, 2차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수사·공판 과정의 담당자들이 성폭력 통념을 수용[12]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성윤리들은 성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또 한번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13]이라는 지적은 피해자가 유발한 성폭력이라는 통념이 법조인들에게조차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성경력이나 사건 당시의 옷차림, 행동, 반항 정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질문되며, 피해자는 고통스러웠던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몇 번이나 되새기며 마치 다시 성폭력을 새로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

12) 한국성폭력상담소(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의 의식이 가장 진보적이며, 남성 검사들의 보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보는 법조인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한편 김선영("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89)은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 등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여하는 6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성폭력 통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집단이 가장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13)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을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성력(sexual history)이나 직업, 사생활 등의 기준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식의 추궁성 수사와 재판 진행이다. 특히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데, 이러한 성력은 '정조'나 '순결'과 결부되어 논의된다[14].

그러나 지금까지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은 매우 이성적인 영역이며 가치 중립적이고,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매우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근대형사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성중립적인(sex-blind, sex-neutral) 일반평균인이지만, 성중립적이며 합리적 인간 기준은 사실상 남성편향적이며, 여성의 처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15]. 법이나 법학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 체계에도 물들어 있지 않은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져 왔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것들이 여성의 경험을 비가시화하며 때로는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어떠한 법도 남성에게 여성을 성폭력 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어떠한 제도도 성폭력 당한 여성을 오히려 비난해 2차 피해를 유발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남성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의 법이나 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법기관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재판과정에서조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처리된다는 점[16]에 있어서도 2차 피해자화의 양상은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 범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남성에 의

14)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이 두 문헌들은 이러한 그릇된 재판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5) 조국, 앞의 책, 2003; Mackinnon Catherine,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vard University Press, 1989.
16) 박선미, 앞의 논문, 1989.

한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이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17].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은 단순히 범죄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에 남성이 당한 성폭력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18].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법적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여성계에서 주장이 과도하다고까지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낸 한 논문[19]에서는 형사사법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문제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형사사법체계는 전체적인 사회메카니즘에서 일탈행위를 선별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사건해결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이다. 이에 심희기[20]는 사법기관에서 행해지는 2차 피해자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2차 피해자화 개념을 아예 협소화 시켜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2차 피해자화(second victimization)로 명명하고 있다. 나아가 2차 피해자화의 현상은 지금까지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피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걱정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이러저러하니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 협조하고 적응하라'는 식의 일방통행적인 주문을 강요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21].

1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3, 128면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은 각기 행태는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남녀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그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8) 김현영은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남성들이 성폭력을 '극복해야 하는 사소한 장난'쯤으로 여기거나 '피해자의 느낌'이 아닌 '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성폭력 인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19) 이호중, "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호, 1991.
20) 심희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부 주관, 2002.

피해자에게 과거의 이성 교제 관계, 성 경험, 피해를 당할 때의 기분을 물어보는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지나치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하는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신감을 잃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침묵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추궁식 질문은 결국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다시 한번 성폭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자화 된다.

사법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자화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지지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그릇된 성폭력 통념을 내면화하고 있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 아니한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성폭력 신고율이 2~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사법기관에서 부당행위를 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1974년 미시간 주가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21) 이 밖에도 심희기는 2차 피해자화의 요인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자화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질문, 피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투의 경찰관·검사의 태도,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의 환부·가환부의 지연·환부 불능,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수사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결핍 등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정 출석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소기각·무죄가 선고되어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출석·증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입감소·임금감액 등의 기회비용,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특히 피고인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질문과 피고인 가족·친구로부터의 위협 등이다.

shield law)'를 제정한 이후, 현재는 연방과 주차원에서 모두 강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데 중대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지만[22] 미야쟈와 고이치[23]는 미국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고소 후 피해자에 대한 사전 청취 단계에서 피해 사실의 존부에 대한 검찰관과 피고인측의 격렬한 반대 심문에 대해 피해자의 답변이 배심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검찰 측이 패배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태도로 질문을 해서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처벌 요구를 관철시킬지 어쩔지를 확인한다고 지적한다.

독일[24]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신문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25]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피해조사와 다양한 개별적 피해연구에서 성범죄의 피해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여,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들 연구들이 성과를 거두며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이 연구들이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다. 특히 피해자학의 등장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다루는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사법절차 과정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본[26]의 경우는 1974년 미쯔비스 중공업 폭파사건을 계기로 1980년도에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27]되면서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조류를 받아들여 1996년 2월 경찰청의

22) 조국, 앞의 책; 2003, 110-122면.
23) 미야자와 고이치. *Einfürung in die Viktimologie*, 장규원 역, 피해자학 입문, 1999.
24) 형사소송법 제 68조 a 제 1항에서 "증인 또는 제 52조 의 제 1항의 의미에서 증인의 근친자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국, 앞의 책, 2003, 109면).
25) 박철현, "카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 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26) 미야자와 고이치, 앞의 책, 1999.
27) 위 법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에서 2001년 4월 13일 개정되었다.

'피해자 대책 요강'과 그에 기초한 각 지역 경찰본부에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자 경찰관으로 편성된 '성범죄 수사반'을 따로 두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점점 쏟게 되었다.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유럽 등 선진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우리나라는 이웃 일본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자, 여기에 고무된 법무부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범죄 피해자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고심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청구권이 신설되었고, 1987년 11월 28일에는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피해자학회가 설립되면서 피해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28].

특히 최근 들어 대두된 피해자학[29]은 그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던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등의 사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성폭력 피해 연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피해자학은 여성을 비롯해 노인, 어린이, 소수 집단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집단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성폭력 피해자 연구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해자학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깨닫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것을 자신의 학

28) 김성돈,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29) 피해자학은 종래의 법학이나 범죄학 등이 피의자나 범죄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비판하며 피해자에게까지 그 학술적 연구와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학문으로, 195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영역의 과제이다. 피해자학은 1956년 이스라엘의 변호사 Beniamin Mendelsohn이 그의 논문 '생물·심리·사회학의 새로운 분야- 피해자학'(Une Nouvelle Branche de la Science Bio-psycho- sociale : Victimologi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오늘날 피해자학의 중심적인 연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보호, 피해자 원조 및 피해자 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김성돈, 앞의 글, 1999).

문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특히 피해를 1차·2차·3차 등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피해자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행 성폭력 피해 연구를 한 단계 위로 끌어 올려 '2차 피해' 개념을 개념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했다.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화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제1차 피해는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이다. 제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3차 피해는 피해자가 1, 2차 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자학의 주된 연구 주제는 주로 1차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는 1차 피해 직후부터 직면하게 되는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피해자화[30]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나 여성계 쪽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며 법학자, 사법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을 비롯해 여타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30)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충격과 고통으로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3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미야자와 고이치, 앞의 책, 1999; 김용세, "일본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피해자학회, 1999; 장규원, "독일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피해자학회, 1998) 1991년 자신이 9살이었던 해 성폭력을 했던 이웃집 남자를 21년 만에 찾아가 살해해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바로 3차 피해자화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1차, 2차 피해의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21년 간을 지내다가 가해자를 다시 살해함으로서 3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표면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고통과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경종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성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세미나 및 연구를 하고 외국의 수사지침들을 번역해 발간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31]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연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거의 없다.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는 것은 사건 해결에 있어 부차적 가치가 아닌 궁극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법기관에서의 2차 피해자화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불이익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법기관에서의 모욕적인 경험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과 성폭력 예방 차원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가능한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를 피해의 각 국면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던 기존의 연구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폭력 2차 피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앞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밖에 없는 2차 피해는 본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2차 피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 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정의한다.

31) 이영주,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경과", 「'수사와 인권' 토론회」, 법무부 대검찰청, 2003, 23-37면.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 국한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성폭력은 그 동안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형법 개정 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재정의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전히 성폭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성의 정조 문제로 바라보고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받을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구분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사·재판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성경험의 유무, 저항의 정도를 중심으로 심문이 진행함으로써 많은 피해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비난의 화살이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듯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단지 성폭력 범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받은 상처를 최소화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 받고, 격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8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을 선포하였다[32].

32) 이중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직업, 나이, 이전의 성 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 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동석할 권리
-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상담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의 실태를 1장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2장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3장 특수 관계에서의 2차 피해, 그리고, 4장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본 연구 대상의 2001년도와 2002년도 연령별 2차 피해의 비율은 서론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에 소개되고 있는 <표 8>과 같다. 표에 따르면 연령별 2차 피해는 성인, 청소년, 아동 순으로 상담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1차 피해의 연령별 순서와 일치한다.

1차 피해에서 피해 유형과 피해자 연령 분포를 2002년도 상담현황에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1) 아동 성폭력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강간, 추행, 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 등이 포함)을 어린이 성폭력, 또는 아동 성학대라 한다. 본 상담소의 2002년도 전체 상담 중 22.7%가 아동 성폭력이다. 만 7세 이하 유아가 7.1%, 학령기 아동이 15.6%를 차지한다. 이들 아동 피해자도 성인 여성 피해자와 동일한 유형의 성폭력을 당하며 강간이 약 24%, 성추행이 약 76%에 이른다.

<표 11>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05	271	113	24	29	942
		17.1%*	9.2%	3.8%	0.8%	1%	31.8%
특수강간		121	34	16		3	174
		4.1%	1.2%	0.5%		0.1%	5.9%
강간미수		73	9	5		1	88
		2.5%	0.3%	0.2%			3%
성추행		503	199	295	183	16	1,196
		17%	6.7%	10%	6.2%	0.5%	40.4%
성희롱		388	49	28	4	10	479
		13.1%	1.7%	1%	0.1%	0.3%	16.2%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전화	41	3			5	49
		1.3%	0.1%			0.2%	1.6%
	사이버성폭력	13	4	4		5	26
		0.4%	0.1%	0.1%		0.2%	0.9%
	몰래카메라	5	1			1	7
		0.2%					0.2%
성폭력 계		1,649	570	461	211	70	2.961
		55.7%	19.3%	15.6%	7.1%	2.3%	100%
스토킹		129	6	1		3	139
성관련		78	55	2	2	62	199
혼빙간		26				2	28
기타		90	19	7		90	206
기타 계		323	80	10	2	157	572
총계		**1,972**	**650**	**471**	**213**	**227**	**3,533**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79%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같은 유형의 피해가 65%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아동이 믿고 신뢰하는 친족, 교사, 유치원 원장, 통학 버스 기사 등이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아동을 성폭력하기 때문이다.

아동을 성폭력하는 어른들은 놀이를 가장한 게임이나, 성교육을 빙자함으로써, 혹은 과자나 장난감을 사주거나 돈을 주는 행위 등으로 아동의 순진성을 악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비밀노출시 가정이 파탄될 것이라거나, 아동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함으로써 피해사실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아이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모르는 사람일 경우 길을 가르쳐 달라거나, 아프다고 위장하거나, 선생님을 사칭하여 어린아이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폭력적 방법(위협, 흉기위협,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 방법(유인, 놀이, 금품, 사칭)의 사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피해 장소는 옥내가 70%로 옥외 27%보다 월등히 높다. 요즘 들어 피해 대상도 여아에 국한되지 않고 남아도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5 ~ 3%(2001년, 2002년)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아직 미숙한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은 성추행에 의해서도 처녀막 파열, 성기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임신과 낙태, 불임의 상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아동은 아직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성폭력이 놀이·애정으로 위장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고, 비밀 유지의 위협으로 부모에게 말을 못하기도 한다. 아동은 부모에게 성폭력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으며, 아동은 주변사람의 반응을 민감하게 해석하여 행동하게 된다.

치료 자원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면적으로 피해 아동은 성인 여성이나 여성 청소년보다 적응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장기적 적응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피해 아동은 오랫동안 가해자에 대한 불안, 공포, 분노, 좌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신경이 예민해지고 식욕을 잃거나, 두통, 복통을 호소하고,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과도 고립되어 잘 어울리려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은 피해 당시의 충격보다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주 양육자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주 양육자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더 강도 깊게 내면화한다. 어린 피해자라 할지라도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순결상실감, 낮은 자존감으로 수치스러워하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 반경을 축소하게 된다. 또한 망각, 번복, 불안, 공포, 위압감에 취약하여 후유증이 내면화되기 쉽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이 극복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은 가족 관계나 사회생활에 적응 곤란을 느끼며 청소년기에 이르러 가출을 하거나 매춘, 알코올, 약물 남용 등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은 강박적인 자위행위를 하게 되거나 자기보다 약한 아동에게 가해 행위를 하게 되어 이유를 모르는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소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성적 자극에 익숙해진 피해 아동은 가해자의 성적 행위의 의도를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상대방의 관심을 받으려고 성적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해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며 또 다른 피해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피해 아동은 적절한 도움--의료적 치료와 감정적 지지--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신속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학령기 어린이(8세~13세)에 비하여 강간보다는 성추행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 염증, 충혈, 출혈 등이 있어도 피해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법 절차상 유아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2차 피해는, 일차적으로 유아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묘사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유아피해자들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거리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표현(악몽, 퇴행,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낸다. 가해자에게 따진다거나 법적 처리를 하려할 때 아이가 머뭇거리거나 일관성 있게 대답을 못해 오히려 반박과 비난을 받게 되어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 피해 정황을 다른 아이처럼 분명히 표현 못한다고 야단을 맞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똑똑하게 진술한 아이는 어른에게 사주된 것으로 취급되었고, 수사 공판과정에 불려 다니며 진술을 한 아이는 큰 건물만 보면 공포에 떠는 후유증을 보였다.

2003년 5월 '아동성폭행 피해자 부모모임'에서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찰 및 검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아동의 기억력은 성인에 비하여 미약한데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처럼 5~6차례 반복 조사와 성인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과 같이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보전 청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33]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경찰청은 시범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관악서, 도봉서 두 곳의 경찰

33) 심희기, "아동 성폭행 피해자 보호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자료」, 2003년 6월.

서에 녹화 설비를 설치하여 상담전문가 등이 배석하거나 주도하여 아동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증거를 영장 신청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석할 상담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1주일 이상 피해자 진술을 유보시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증거력을 가진 녹화가 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배석자의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3년 6월 11일 검찰은 성폭행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검사가 초기 경찰수사를 직접 지휘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자는 피해아동의 발달상의 특성과 피해아동이 범죄와 형사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사례 3-1> 2003년 10월 피해 아동이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34]. 피해 당시 5세이던 피해 아동은 경찰수사, 검찰수사에서 여러 번 진술을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후유증이 심각하였다. 형사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후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검찰 수사를 재개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후유증을 염려한 보호자는 진술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출두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1심 재판부는 재판 장소 이외의 진술이나 초기의 진술자료 활용 등을 시행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35].

34) 중앙일보 2003년 10월 30일자 기사 참조.
35) 이외 사례는 4장의 아동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부분을 참조.

(2) 청소년 성폭력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2000-2002년)

<단위 : 건>

연도	성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소계	총계
2001	여	47	115	149	843	1,456	878	480	141	67	4,176	4,355
	남	5	3	9	25	62	40	30	2	3	179	
2002	여	93	424	291	1,126	1,943	1,015	584	136	81	5,693	6,034
	남	5	26	14	33	103	75	43	13	29	341	
계		150	568	463	2,027	3,564	2,008	1,137	292	180	10,389	10,389

출처 : 범죄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도 여성 청소년의 강간 및 특수강간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피해자의 연령(2001-2002년)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도	연령					총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2001	591	256	93	23	34	997
	2002	505	271	113	24	29	942
특수강간	2001	65	39	5	0	4	113
	2002	121	34	16	0	3	174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동년배나 선배 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는 미팅,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원치 않는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호감을 가지고 만났거나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비디오방에 간 경우, 동의된 성관계와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본인도 자책감을 많이 갖는다. 간혹 여성 청소년들이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단란주점, 사진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나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폭력의 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받는다. 반면에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강간치상, 특수강간을 제외한 성폭력은 거의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제적인 폭력의 행사를 증명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거나, 피해가 2회 이상 지속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혐의 처리되면서 청소년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인 충격으로 인한 불안, 공포, 민감, 집중력 저하, 악몽, 불면 등에 시달리며 절망감, 순결상실감, 자포자기로 섭식 장애(거식증,

폭식증), 자해, 자살기도,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남성을 기피하고 혐오하기도 하여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어 학습부진, 방황, 가출, 자퇴를 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간혹 자기감정을 억압하고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업에만 매달리거나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을 과잉 희생하거나, 과잉 통제를 하기도 하며 다중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많은 피해자가 무력감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성폭력에 계속 노출되어 반복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스스로 불량학생들과 어울리거나 파괴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거나 성매매 행위에 뛰어들기도 한다.

가임기인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 중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혹시 임신이 되거나 성병에 걸린 게 아닐까 불안해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임신 중절이 어려운 6개월 이상까지 손을 못쓰고 있다가 무리하게 낙태를 하여 몸을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수 없이 출산하여 입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자 진술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며 억압적인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대질심문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행실, 성적, 옷차림 등에 대한 비난으로 고통을 받았고 증거가 미비할 때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례 3-2> 고2 여학생이 채팅으로 몇 번 만난 남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했다. 가해자는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였으나,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따라갔기 때문이라며 강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3-3> 중학생 친구들과 놀다가 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 치상을 당하였다. 고소하였으나 형사가 피해자를 불량소녀 취급하면서 모멸감을 주었다.

<사례 3-4> 중3 여학생이 고등학생 2명에게 끌려가 윤간을 당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기를 졸라 이사비용을 받았다. 비친고죄라 재판이 진행되는데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법원 복도에서 가해자의 모가 자기 아들 빨간 줄 가게 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비난하고,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학교 성적, 가출 경력, 성경험 여부, 음주 여부 등을 집요하게 반복 질문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년기 피해자는 아직 성인과 같은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은 어떤 연령층보다도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회피한다.

피해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절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 능력을 인정한 경우 청소년의 고소도 일단 받아주지만 특수강간인 경우, 인지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부모에게 연락이 가서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한다. 부모에게 나중에 알려진 후, 부모는 고소과정에서 자녀가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망설이기도 하고, 고소를 했다가도 합의를 조르는 가해자 측에 시달려 고소 취하를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취하하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3) 성인 성폭력

성인은 판단 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폭력의 통념이 내면화되어 있어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또한 저항을 불능케 할 강력한 폭행, 협박 등 증거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강간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데이트 중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경우, 음주로 인사불성인 상태, 피해장소가 가해자 차량, 여관, 호텔, 피해자 집, 가해자 집인 경우 피해자가 방어하지 못한 책임을 비난받게 되고 법적 처리에 소극적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 이후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금품갈취, 폭력, 주변에 소문내기, 스토킹, 카메라 촬영 협박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보면, 업무관계로 만났거나 데이트관계에서 식사나 술을 같이 했을 경우, 술이 만취된 심신상실의 경우에 준강간으로 처리되기보다는 동의된 성관계로 몰려 무고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후 혈액검사 등에서 알콜 농도, 약물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미혼의 성인 피해자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으로서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중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 성인 피해가 59.8%이고 직장 내 피해가 22%임을 감안한다면 성인 피해의 반 이상이 업무상 만난 사람, 직장관계자라고 보여진다.

기혼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성폭력 피해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인내심있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간의 갈등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 피해가 지속 반복된 경우에도 동의된 성관계(화간)로 몰리어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되기 쉽다. 친고죄이고 본인은 원치 않는데도 남자친구, 애인, 남편, 아버지의 강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2중, 3중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제적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수사·공판 관계자가 경제적 보상에 의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어하고 무죄라서 풀려 나온 것으로 여겨 불구속수사나 불구속 구공판을 수용하기 힘들어한다. 피해자에게 불구속과 불기소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분노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형량과 보상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모적인 집착으로 고소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한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인적이 드문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이 동네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의 침입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러 하는 길이나 산행 중의 노년기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추행인 경우는 노인정이나 노인학교에서 만난 사람, 또는 사위 등 친족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노년기 여성은 피해 상황에서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피해시 치명적인 상해를 입으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기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 피해 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고소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고소를 해도 진술이 정확하지 못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유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 피해자는 아동, 장애인처럼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주변사람이나 상담기관, 수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본 연구 대상의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관계별 2차 피해는 사적 관계, 공적 관계, 특수 관계에서의 비율이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표 14>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적 관계	65	27.4	65	23.8
공적 관계	58	24.5	71	26.0
특수 관계	84	35.4	96	35.2
기타	30	12.7	41	15.0
계	**237**	**100**	**273**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 표에서는 특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으로 분류된 장애인, 동성 2차 피해 2001년 5건, 2002년 7건이 사적, 공적 관계에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이 중복 계산되어 <표 8>에서보다 합계가 그만큼 늘어나 집계되었다.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2001년 27.4%, 2002년 23.8% 이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피해 중에는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이웃 등 아는 사람, 교제 관계, 가족·친족에 의한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5>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족 · 친족	10	15.4	10	15.4
교제관계	25	38.5	29	44.6
이웃 등	30	46.2	26	40.0
계	**65**	**100**	**65**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가족 · 친족에 의한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린 시절 가까운 친인척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이를 피해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상담소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고소를 결심하거나 부모가 인지하여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싶어도 공소시효 7년이 넘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약 30%를 차지하며 피해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또한 강간이 64.2%(일반어린이 38.8%)를 차지한다.

일반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그 피해 유형은 성인의 유형과 비슷하다. 대개 5, 6세 유아시기에 추행으로 시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거의 모두 강간 피해에 노출이 된다. 손가락으로 질 삽입 또는 항문삽입, 혀 넣고 키스하기, 성기 만지기, 가슴 만지기, 구강 성교 강요 등의 성추행에서 다양한 체위의 강간에 이르기까지 어린 피해자를 학대한다.

가해자로는 아버지 관계에 있는 친부(44.6%), 의 · 양부(12.8%)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형제인 친오빠가 14.9%, 사촌오빠가 12.8%, 삼촌, 외삼촌이 10.9%를 차지하고 있다. 72.3%에 이르는, 친 · 의 · 양부, 친오빠, 사촌오빠에 의한 근친성폭력은 피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피해 아동은 가족, 친인척 등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임신과 낙태, 불임, 가출, 자살시도, 살인 등 극한상황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친부, 친오빠 등 직계가족이 가해자일 때 가족 내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이 역기능 가족의 특성이다. 모가 실제로 부재(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있어도 질환, 장애, 정서적 의존, 가정폭력과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가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딸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친가 쪽 친척(조부, 고모부, 삼촌, 고종사촌)이 가해자인 경우와 외가 쪽 친족(외조부, 외삼촌, 이종사촌, 형부, 이모부)이 가해자인 경우, 부모와 친척들과의 권력관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며 이 와중에서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심리적인 상처를 받곤 한다.

의부, 의붓오빠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의해 친족에 2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됨에 따라 비친고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모의 동거남 또는 모의 교제남이 가해자일 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친족간의 위계에 의해 거부 저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친족관계의 지속성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며, 아동학대나 폭행, 아내구타 등과 병행되는 것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형사 사법 절차상에서 비롯되는 2차 피해는 친족 성폭력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친족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빚어지는 피해이므로 피해자 조사시 상간이라는 용어나 서로 좋아했느냐, 즐겼는가 등의 질문은 상처를 준다. 조사 용어에 대한 이러한 주의가 없는 데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결국 대질심문이나 증인출석 요구 등으로 대면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질을 피하고 칸막이나 커텐, 일면경을 사용하여 직접 대면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아래의 사례와 같이 피고인 변호사에 의해 2차 피해가 유발되기도 한다.

<사례 3-5> 부모의 사망 후 큰집에 맡겨졌던 13세 여아가 큰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아가 증인으로 출두하게 되었다. 비공개 신청을 하여 재판정에서는 보호를 받았으나,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큰집 친척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탄원서를 강요하고 비난하였다. 피고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습적인 도벽과 가출벽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무고 하는 게 아니냐며 억압적인 목소리로 몰아치며 신문하였다. 배석한 상담원이 판사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판사가 제지하였다.

부부 불화시 근친 성폭력을 고소한 것 자체가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에 이용하려는 어머니에 의해 사주 받은 행동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사례 3-6> 이혼 후 고1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부가 키우는데 부가 평소에도 폭력적이었다. 부가 딸을 성폭행한다는 것을 피해자인 딸이 모에게 호소하여 모가 고소하였다. 검사는 모가 다그쳐 딸이 거짓진술을 했고, 딸의 일기장도 모가 시켜서 쓴 것이고, 의사의 진단서도 모가 억지부려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리하였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고 대질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도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한다.<사례 4-56>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과거에는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이 가장 흔한 성폭력의 형태로 여겨지고, 강간은 으슥한 곳에서 가학적 흉악범에 의해 물리적 폭력이 행사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의 65~70%는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데이트 강간(date rape)은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간에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맞선 본 사람, 채팅으로 만난 사람, 부팅으로 만난 사람, 원조교제, 전 애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30대나 4, 50대에서도 일어난다. 피해 장소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 여성은 동의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고소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며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순결상실감으로 다른 대상과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며 임신, 낙태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또한 데이트강간 이후에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스토킹,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배우자 성폭력(marital rape)은 주로 가정폭력의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미국 및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강간이 법적으로 강간임을 인정하고 있지

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데이트 성폭력에서 2차 피해의 대부분은 데이트 상대자인 가해자가 성폭력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서 대부분 비롯된다. 또한 비록 고소를 하여도 오히려 그러한 원인을 자초한데 대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을 고소까지 끌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간혹 가서도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 간통죄로 맞고소를 당하고, 검사에 의해 무고로 피소될 우려조차 있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호소가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사공판 담당자는 동의, 저항, 구조요청, 합의 여부 등에 대하여 동의된 성관계가 아님을 밝혀야 하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묻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고, 자세한 피해 상황의 성행위 묘사를 요구받고, 고소 취하를 종용받고, 무고로 넣겠다는 위압적인 태도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다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당한 피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난받고, 동의된 성관계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3-7> 고2 여학생이 채팅 남으로부터 강간당하여, 임신, 낙태하였다. 경찰에서는 가해자 집으로 피해자가 갔으므로 성관계를 생각하고 간 것 아니냐고 하였다. 경찰에서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사례3-8>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아는 형이랑 나왔다. 술 마신 상태에서 차가 견인되었다고 하더니 30분만 자면 깨니까 쉬었다가 바래다주겠다고 하였다. 여관에서 방을 두개 잡았으나 각각 들어가더니 그냥 좀 쉬라고 한 후 강간하였다. 소리지르고 반항하였으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 고소하자 경찰이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였다.

<사례3-9> 채팅으로 만난 남자 집에 놀러갔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 고소하자 경찰이 "그 집에 간 것은 그런 생각하고 간 거지, 술은 강제로 먹이냐? 스스로 먹은 거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사례3-10>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강간 폭행하여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였다. 경찰이 누구 말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사례 3-11>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두번째 만난 날,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손을 잡자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애들 풀어서 '돌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결국 모텔로 끌려가 강간당하였다. 모텔 연락처를 받아놓고 경찰에 가서 의논하니 경찰에서는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다. 병원에 가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 후배들이 합의하라고 계속 위협하고, 가해자는 대질심문 이후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서는 화간을 주장하며 자신의 폭행만 인정하였다. 검사가 합의를 종용하며 1주일 여유를 주었다. 결국, 강간치상은 인정되지 않고 폭력에 대한 벌금형만 나왔다.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동네 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앞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유형은 동네 상급생 남아가 자기 동생 또래인 어린 유아나 저 학령 여아를 성폭행 하는 경우, 동네 노인이 여아나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경우, 동년배 동네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성폭력의 특징은 앞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와 뒤에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참고하면 된다.

평소에 안면이 있을 경우, 고소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가해자를 옹호하

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가해자가 평소 신망이 있었다거나 지역 유지 등이라면,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여지는 거의 없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연명해 돌리기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안시 당하게 될 여지가 크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적, 신변상의 일이 알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입양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사례4-93 참고)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본 연구 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사례 분석에 의하면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약 25%이다.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중에는 아래의 <표 16>에서 보듯이 직장·학교 등 일터, 종교·의료 등에서의 관계에 의한 순으로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6> 공적관계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직장·학교 등의 일터	40	69.0	63	88.7
종교·의료 등	18	31.0	8	11.3
계	**58**	**100**	**71**	**1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직장·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① 직장 내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황에서는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직장 내에서 겪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이란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무 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 기간을 말한다.

직장 내 관계에서의 강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행 등은 형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형법 303조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문제제기 후 피해자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 불이익과 심적 고통을 겪게 되어 노동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등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결국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게 되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고용주나 상사의 지인, 거래처 사람, 고객 등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고 개인 영업, 서비스, 판매 사업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업무상 친절하게 대한 것이 가해자 행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고 따라서 성폭력을 화간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으며 강간이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되었을 때 남편에 의해 간통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여성이 피해를 당한 후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피해가 지속되기 쉬우며, 오히려 폭로 위협과 금품 갈취 등의 시달림을 겪는다. 고소 후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피해가 오히려 화간으로 의심받고 '왜 고소를 늦게 했느냐?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시달리게 된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심지어는 가해자의 부인에게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기

도 한다.

한편 피해를 인지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가해자를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물적 증거로 확실하지만 강간, 추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곤 한다.

업소 여성,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과정에서 많은 수모를 당한다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여성들은 과거의 성력과 차림새, 음주상태 등에 대하여 비난받고 있으며, 고객에 의한 폭행과 완력이 수반된 성행위 강요, 폭언과 추행 등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치부되어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고 꽃뱀으로 몰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강간의 경우에, 수사 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사례3-12> 입사한지 1주일만에 회사 사장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고소하고 진단서도 제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계장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엄마가 술집을 경영하는 것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였다.

<사례3-13> 회사사장으로부터 어린 여사원이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검찰에서는 내연의 관계로 종결하였다.

<사례3-14> 직장 동료가 술 먹고 집에 찾아와 강간하였다. 고소했으나 경찰이 피해자가 불러들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문하였다.

<사례3-15> 회식 후 가해자 집으로 모이기로 했다고 하여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들과 함께 가해자 집에 갔다가 강간치상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다. 검찰에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치상은 일주 진단이므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간으로만 기소하겠다고 하였다.

<사례3-16> 회식 후 직장상사가 여직원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다. 고소하자 가해자 측에서 증거 인멸을 위하여 증인 (여관, 밥집, 호프집 주인 등)들을 돈으로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계속 경찰 측 조사만 받고 있다.

<사례3-17> 직장상사가 회식 후 차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신고하여 현장에서 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였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재수사 지시를 하였다. 현장 검증시 가해자 측 친구인 불량배들이 피해자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사례3-18> 세무사 사무장이 강간하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였다.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

직장 내 추행의 경우 수사 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사례3-19> 상사가 강제추행과 음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1개월 후 고소하자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고소의견을 송치하였다.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서로 좋아한 것 아닌가,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추궁하여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였다. 검사에게 두 번 불려 가 종일 진술하였다. '도망가지 못했다'를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써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사례3-20> 회사 야유회에서 상사가 추행하여 싸우는 도중에 졸도하여 119로 실려갔다. 상해 1주, 정신과 치료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하니 성추행은 증거가 없다고 하고 상해 쪽으로 몰고 갔다.

<사례3-21> 보험회사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인데, 남자 직원이 시비를 걸어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목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가슴을 3번 정도 만졌다. 처음에는 폭행부분만 고소하여 벌금 300만원과 2일 구류가 내려졌다. 다시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3-22> 가해자가 직속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지방으로 내려 오라고하여 술을 먹인 뒤 숙소를 잡았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갔다. 방만 잡아주고 갔다가 다시 양주를 들고 방문하였다. 술을 먹은 후 "이제 가라"라고 하자 강제로 키스하고 온몸을 만졌다. 단란주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노조 사무실 전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사례 3-23> 사무실에서 3회 정도의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호텔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쳤다. 퇴사 후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였다. 다른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혐의는 기소했으나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으로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행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음란한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조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단체에 의해 성폭력특별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삽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② 학교 성폭력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년도 상담 중 교육자에 의한 제자 성폭력사례는 110건이다. 여기서 교사라 함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 제도교육권내의 교육자를 의미하고, 강사라 함은 사설학원, 과외, 체육관 등 비공식기관에서의 교육자를 의미한다.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가르침과 영향력을 받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다. 이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피해자는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피해를 드러내기가 힘들다. 용기를 내어 드러내어 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인정받고 칭찬 받고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성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가 지속된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부모보다 교사를 더 막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면 소란스러워지고,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부모들도 분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교사에게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해온 경우에는 문제제기하자고 규합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려 후속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를 인지한 많은 여교사(여교수)들이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

측은 관리상 문책을 모면하려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의 경우 교수에 의한 조교, 대학원생, 대학생 피해가 학내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특히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예·체능 계와 논문지도, 실험, 임용 문제 등으로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제기 이후 무고 공방,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지원자인 총여학생회와 대학 당국의 대치 등 파생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

동급생·선후배에 의한 피해

학교에서 동급생·선후배에게 당하는 피해는 다양하다. 아동의 경우 대부분 장난이나 호기심의 차원에서 무마되고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학교 교사의 중재로 사과나 문책, 전학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여러 명이 어울려서 취약한 환경의 아이를 골라 괴롭히는 양상이 자주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 후유증도 심각하다.

<사례 3-24> 중2 동급생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오다가 가방을 빼앗고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친구에게 의논하자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 없이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부모에게 학교장이 아주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 1주일간 견디며 학교에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진 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 측 부모는 사태를 가볍게 취급하고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였다.

한 학교 내에서 가해자·피해자를 교육하여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가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는 교정, 교육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과 자기 행동의 결과를 책

임지는 인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학 내 사건으로는 학과, 동아리 술자리나 MT에서의 성폭력, 데이트 관계에서의 성폭력, 스토킹, 결별 후의 소문내기, 화장실, 도서관에서의 피해, 사진이나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게시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대자보로 사과하기, 성폭력 상담 기관에서 가해자 교육, 자퇴, 휴학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한 피해

학교 관계자로는 학교 직원, 운전기사, 급식배달인, 수위, 학교주변에서 학생을 상대로 영업하는 문방구 주인, 학교에서 참여하는 수련장 레크레이션 강사나 교관, 교사를 사칭한 침입자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보여 지고 있다.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학교에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상담 담당 부서 설치 등을 시달하고 있다.

피해자 수사·공판과정에서 종종 학교성적, 품행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좋아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냐, 사적 감정으로 무고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의심을 받곤 한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성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력의 행사와 적극적인 저항을 증명하기 어렵고 같이 술을 마셨다던가, 피해가 지속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사제관계는 강력한 권력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는 공무원 보호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이 안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를 취하시키려 노력한다. 또한 학교당국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우려하고 관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려고 한다. 따라서 취약한 위치의 학생 입장을 감안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2차 피해자화를 예방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권유하거나, 합의금을 올리려고 하느냐는 등의 질문

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가해자와의 결탁을 의심하여 분노와 상처를 받는다.

<사례 3-25> 피해자가 이공계 대학원에서 밤새워 실험을 하던 중 같은 학교 교수인 피의자가 피곤하니 잠깐 쉬고 오자고 하여 교수의 차를 탔다. 모텔에서 식사와 약간의 술을 같이 한 후 강간을 당했다. 강한 억압과 저항이 없었고, 성기삽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례 3-26> 피아노 레슨 중에 교사가 추행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평소에 교사를 짝사랑하여 쫓아다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교사의 결백을 지지한 학생들의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피해 여학생이 수사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하였다.

<사례 3-27> 초등학교 6학년 여아가 담임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졌다. 부모가 고소하자 변호사를 통하여 4,000만원에 합의하자고 졸랐으나 거부하자, 아동이 거짓 진술한다고 공박하며 육성회 등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다. 법정 구속되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아동은 전학하고 이사를 해야 했다.

<사례 3-28>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추행 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 그곳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는데 1심 선고 전에 합의를 보려고 피해자 가족들을 귀찮게 쫓아다녔다.

<사례 3-29> 코치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운동선수들이 반발하고 항의하자, 선수들을 대회에 출전시켜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세 명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학교 측에서 고소취하를 강권하였고, 두 명은 취하하였다. 끝까지 취하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추천을 해주지 않았다.

2) 종교 · 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①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성직자에 의한 신도의 성폭력 피해는 폭력과 위협보다는 유인과 위계가 많이 작용한다. 교리를 인용하여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고, 병의 치유를 빙자한 안수행위, 악령을 쫓아준다는 구마행위, 개인 신상에 관한 상담과정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직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도의 자발적인 추종과 순응으로 진행되고, 거의 헌납적인 모습으로 당하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성직자를 비호하는 교인들의 비난을 받으며 종교단체 내 세력간 다툼에 이용되기도 한다. 교단의 책임회피나 압력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하는 단체나 사건을 보도한 매스컴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직자의 가해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자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도의 취약점과 정신적인 의존을 빌미로 자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고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자는 논란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거의 가해자의 구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을 이루지 못했는데 특수한 집단의 내부 사정을 탐문해야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수사진의 강력한 의지가 없고서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